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2.



김 귀 화 의원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김귀화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됨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임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822006
----------	----------

발의일자: 2022. 1. 25.

발 의 자: 김귀화,배지훈,조복희,안영란,
원종진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 됨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임토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나.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연임토록 함(안 제17조제7항)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17조제7항 단서 중 “한”을 “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7조(구성 등) ① ~ ⑥ (생략)</p> <p>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 ----- ----- ----- -----.</p> <p>제17조(구성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p> <p>두 -----.</p>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현행 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 관할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으며, 비례대표 구의회 의원은 거주지 행정동이 속한 지역구 구의회 의원 선거구 관할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 동장은 해당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1. 해당 행정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
 3.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 중 어느 하나의 관할구역 위원회만 위촉
 4.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주 근무지 내 관할구역 위원회만 위촉
-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여러 분야에서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분야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며,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 ⑥ 동장은 고문 및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고문 및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